

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기준(제21조 관련)

| 평정 등급(비율) | 평정가능 점수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수(20%)    | 90점 이상 100점 이하 |
| 우(40%)    | 70점 이상 90점 미만  |
| 양(30%)    | 55점 이상 70점 미만  |
| 가(10%)    | 55점 미만         |

※ "가" 등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"양" 등급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

※ "가" 등급 대상 요건

- ① 업무상 비위(공금 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, 금품 향응·수수, 소극행정 등)
- ② 성과금 부당수령(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),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(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, 대리입력 등) 및 부정청탁 등 평가 공정성 저해
- ③ 진행중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원점수가 최하점이면서 최근 3회 평가에서도 평가자 원점수가 최하점인 경우가 1회 이상 있는 경우(평가단위가 6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)
- ④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,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·조치된 경우(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)

※ 소수점 이하 등급 발생 시 배정 기준

- ① 소수점 이하 점수가 높은 등급 순으로 인원 배정
- ② 소수점 이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위 등급 배정